

조문별 제개정이유서

1. 우수무관 활용을 위한 임기 조정(안 제8조)

가. 개정 이유

- 우수 무관을 지속 재외공관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임기를 단축하고, 연장 및 단축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우수 인력에게 연장 근무 기회를 부여하여 지속 활용

나. 개정 내용

- 우수 무관을 활용하기 위해 무관의 기본 임기를 ‘3년’에서 ‘2년’으로 조정
- 임기의 연장 및 단축 기준을 기존 ‘1년 범위내에서’ 에서 ‘1년 단위’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무관 임기를 조정하여 재외무관 근무 활성화 여건 마련
- 우수 인력에 연장근무 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우수무관 활용을 위한 정원의 탄력적 운영(안 별표)

가. 개정 이유

- 우수 자원을 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성급 장교에 한해 정원 범위내에서 한시적 조정·운용이 가능한 여건 마련

나. 개정 내용

- ‘별표’ 정원표 하단에 ‘비고’항 신설
‘국방부 장관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장교의 정원 총원 범위 내에서 군별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’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우수 무관(장성)을 운용 가능한 여건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